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3475 |
|------|------|

2026.03.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02월 09일, 최유희 의원(찬성자 16명)

2. 회부일자 : 2026년 02월 1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유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5조)
- 라.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창업지원 정책 수립·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

2.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방침(2014년)에 따라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및 혁신창업 생태계 구현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시행일: 2026. 7. 1.]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

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1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2026.7.1. 시행)되어 그동안 고시¹⁾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중 하나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규정하여 센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이러한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에 따라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협력 기업인 CJ(주)와 협력하여 서울시 특화 분야(유통·콘텐츠·인공지능 등)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임(2015.7.17. 개관).
- 동 센터는 용산과 종로에 마련된 2개 거점을 기반으로 보육공간 제공, 멘토링 및 전문 컨설팅,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글로벌 투자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요>

-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개관 : '15.7월
-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매칭(서울 ⇄ CJ) : '14. 9. 12.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373호) : '14. 11. 21.

1)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계획(부시장방침 제122호) : '15. 3. 26.

- 위 치 : 용산푸르지오써밋 5층, 서울지방우정청 5층 및 6층 일부
 - 메인센터(용산, 2,216㎡) : 열린공간, 오피스, 회의·교육 공간 등
 - 인큐베이팅센터(종로, 2,944㎡) : 인큐베이팅 공간, 멘토링룸 등

□ 인 력 : 총 63명(4개 실, 12개 팀)

- 예산(2026년) : 10,184백만원(국비 8,447백만원, 시비 1,390백만원, 기타 347백만원)
 - 중기부 예산반영 권고 : 국비 60%, 시비 40%
 - 지방비 편성 기준 : 인건비 30%, 경상비 30%, 사업비 40%

| 구분 | | 2026년도(단위 : 백만원) | | |
|-----------------------|-----|------------------|-------|-----|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금 지원 사업비 | | 국비 | 시비 | 기타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784 | 399 | 197 |
| | 운영비 | 1,727 | 413 | 0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사업비 | 578 | 150 |
| 총 계 | | 8,447 | 1,390 | 347 |

□ 주요 사업

- 창업기업 보육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그리고 동 센터는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비·시비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 센터의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국비 60%, 시비 40%)에 따라 매년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합계 | 국비 | 시비 | 국·시비 비율 |
|-------|-------|-------|-------|---------|
| 2022년 | 4,193 | 2,693 | 1,500 | 64:36 |
| 2023년 | 4,309 | 2,759 | 1,550 | 64:36 |
| 2024년 | 4,160 | 2,710 | 1,450 | 65:35 |
| 2025년 | 4,246 | 2,810 | 1,436 | 66:34 |
| 2026년 | 9,837 | 8,447 | 1,390 | 86:14 |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과 센터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창업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1항이 개정되어 센터의 법적 지위가 법률에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적 협력 구조를 명문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이미 존재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예산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아울러 동 센터의 주요 기능이 서울경제진흥원이 수행 중인 창업보육,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우려됨.
- 그러나 협력체계의 제도적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기능 중복 문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정립과 기능 분담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과 센터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경기도 등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서울경제진흥원과 같은 창업지원 전담 공공기관이 없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 구분 | 조례 | 제정일 | 창업지원기관 보유 여부 |
|----|-----------------------------|-------------|--------------|
| 경기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0.01.13. | ○ |
| 제주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2.04.19. | × |
| 충북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0.14. | × |
| 울산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01. | × |
| 광주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3.04.10. | × |
| 경북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10. | × |
| 경남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3.08.03. | × |
| 인천 |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9.27. | × |
| 대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3.10.06. | × |
| 세종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2.18. | × |
| 부산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2.27. | × |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2024.06.07. | × |
| 대구 |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 2024.05.17. | × |
| 전남 |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2024.10.24. | × |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2024.12.06. | × |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 자체의 표현과 구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상위법상 지정 근거를 직접 인용하여 대상 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라. 협력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장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정책과의 연계, 공동사업 추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2.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는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과 동 센터 간의 연계·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협력 기반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협력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울경제진흥원 등 기존 창업지원 기관 및 관련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역할 분담과 사업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재정적 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이는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3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상 근거를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상위법을 근거로 동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안 제4조의 재정적 지원 규정은 기존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이 곧바로 재정지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향후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서울시 창업지원 전달체계 전반과의 정합성, 타 기관과의 기능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행정적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는 재정적 지원 외에 행정적 지원 근거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센터의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행정적 협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적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비교적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47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윤종복, 이성배, 이숙자,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허·훈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창업지원 정책 수립·개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2.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의 활용)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를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지역창업전담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재정적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창업정책과)에 확인한 결과는 기추진사업¹⁾으로 해당 사업을 추가확대하지 않는 한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5조(행정적 지원)와 제6조(성과의 활용)는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 2026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 1,389,570천원